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9.

발 의 자 : 송옥주·임종성·서삼석
박 정·유동수·안호영
이성만·박용진·박찬대
정춘숙·김경협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제안이유

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.

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·보관하도록 하고,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·재사용·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,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).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분리·보관 등) ①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의 폐차 과정에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(이하 “전기자동차폐배터리”라 한다)를 분리·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종류 및 분리·보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3(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의 설치)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·재사용·재활용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의 전기자동차폐배터리 보관량 및 재사용·재활용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③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2(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분리·보관 등) ①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의 폐차 과정에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(이하 “전기자동차폐배터리”라 한다)를 분리·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종류 및 분리·보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3(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의 설치)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·재사용·재활용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의 전기자동차폐배터리 보관량 및 재사용·재활용 현황을 조사하</u></p>

여야 한다.

③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
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